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농업관개부 농업국 간의  
식물검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농업관개부 농업국(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으로부터 양국의 영토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식물검역 분야에서의 양측간 협력 강화·발전을 희망하고, 위생과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WTO 협정과 FAO 국제식물보호 협약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항 목적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 및 국제식물보호협약(FAO/IPPC)’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관련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에 기초하여 식물검역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강화·발전시키는데 있다.

### 제 2 항 협력활동

이 양해각서 하의 협력활동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a) 식물검역에 관한 협력사업의 수행

- (b) 식물검역 전문가 교환 방문
- (c) 식물검역 역량평가, 식물보호 지원 및 훈련 제공
- (d) 검역 기술 교환
- (e) 휴대용 검사 장비 제공
- (f) 학동 세미나 및/또는 워크숍
- (g) 정보교환 그리고,
- (h) 기타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한 식물검역과 관련된 다른 협력

### 제 3 항 연락

1. 양측은 이 양해각서 하의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관을 지정한다. 양측의 조정관은 합동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마지막 해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한다.
2. 양측간의 연락은 전화, FAX,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 제 4 항 인적 교환

양측은 이 양해각서 하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대국 전문가들을 초청할 수 있다. 양측은 상대국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상대국 전문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적어도 30 일전에 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관은 상대국 전문가의 방문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 5 항 비용

본 양해각서 하의 비용은 양측 협의를 통한 상호 결정에 따라 정한다.  
양측은 서로 협의하여 본 양해각서 하에 수행되는 전문가 상호 방문과 같은 협력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결정한다.

## 제 6 항 일반 규정

1. 본 양해각서는 국제법 하의 어떤 법적 의무사항도 만들지 않는다.
2. 본 양해각서는 양측은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적절한 예산과 인력 가용성 안에서 수행된다.

## 제 7 항 분쟁 해결

본 양해각서에 대한 해석과 실행에 대한 이견은 양측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 제 8 항 발효, 종료 및 수정

1.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3년간 유효하다.

2. 양해각서는 어느 일방이 이 양해각서 종료 의사를 서면 통지 하면 종료된다. 종료는 어느 일방의 통지서가 접수된 후 3개월 후에 효과가 있게 된다.
3.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2014년 11월 24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본, 미얀마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표하여

김정률

24. 11. 2014

미얀마연방공화국  
농업관개부를  
대표하여

MM

24. 11. 2014